천안고용노동지청 (공시송달)공고 제 2026-154 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14조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11. 16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2조, 제29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내용		
1	하*경	83.11.30.	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**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**2026. 11. 16. ~ 2026. 11. 30. (15일)**
5. 기타사항은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서대연(Tel. 041-620-950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